

골재선별·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20일	
신고인	상호(법인명)		성명(대표자)		
	주소			전화번호	
	등록업종			등록번호	
신고 내용	구조물(아적장) 설치장소				
	설치(점용)면적		설치(점용)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		
	연간 생산량				

「골재채취법」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재선별·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골재선별·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(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) 나.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다. 사업계획서(골재의 선별·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,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, 환경오염감소대책,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) 라.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. 골재선별·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